

##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

「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47조의2(지방세 징수의 준용)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건 명 :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

2. 법적근거 :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 
지방세기본법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3. 체납 및 압류대상

수용가 현황			체납기간 (월)	체납금액 (원)	압류자 및 압류대상		
고객번호	주소	성명			소재지	성명	압류물건
1994006878	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4길 38 (신천동 417)	김○용	2023. 6. ~ 2023. 12.	19,760	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4길 38 (신천동 417)	강○진	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4길 38/ 신천동 417 [토지 및 건물]
2003002487	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88길 104, 101동 202호 (방촌동 1084-748)	이○환	2023. 7. ~ 2023. 11.	306,720	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88길 104, 101동 202호 (방촌동 1084-748)	이○환	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88길 104, 101동 202호 (방촌동 1084-748) [건물]

4. 공고기간 : 2024. 3. 22. ~ 4. 5. (15일간)

5. 안내사항

-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-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.

6. 의견제출 기관 :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요금팀

(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55, ☎ 053-670-3120)

7. 의견제출 기한 : 2024. 4. 5.(금) 까지

2024. 3. 22.

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

